

<당규 제19호>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17.1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원칙) 이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선거관리)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각급 선거를 지휘 총괄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당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③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조의 2(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2020.1.5>

-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 등록 15일 이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중앙당은 5인, 시·도당은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상임대표 및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로 한다.
- ④ 중앙당 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며, 시·도당 심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 등록,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⑥ 중앙당 심사위원회는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법적 자격, 도덕성, 당원의 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며 시·도당 심사위원회는 이를 준용한다.
- ⑦ 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결과를 곧 바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당 심사결과의 재심은 중앙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앙당 심사결과의 재심은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한다.
- ⑧ 심사위원회는 적격, 부적격 판정 결과와 사유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적용)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의 선출의 경우, 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경우와 그 외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제4조의 2(투표율) <신설 2020.1.5>

각급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과반수의 참여로 선출한다.

제5조(선거구)

-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단,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구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② 당직 중 대의기관(대의원, 중앙위원)은 당규 제5호 선출직 대의기관 구성 규정에 따른 선거구로 각각 선출한다.
- ③ 기타 당직자의 경우 관련 당규에 따라 선출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제7조(피선거권)

-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6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③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6조 1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3장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제8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5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9.29.> <개정 2020.5.16>
- ②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흡수 순번을 부여한다.

제9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제10조(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할당의 적용)

- ① 당직자 선출시에는 여성당원 30%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여성당원 30% 할당정수로 한다.
- ② 해당 선거구의 후보등록결과 여성당원 30%할당 정수에 미달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후보자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을 했음에도 할당정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는 중단한다.

제11조(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

- ① 당직자 선출시에는 장애인당원 5%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해당 선거구의 후보등록결과 장애인당원 5%할당 정수에 미달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후보자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을 했음에도 할당정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는 중단한다.

제4장 선거공고

제12조(선거공고)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해당 선거의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2.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대통령후보 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30일 전까지, 기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는 해당 선거의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중앙위원회, 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작성)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확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14조(선거인명부 열람)

- ①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지역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 ③ 단, 1, 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시 당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④ 위 1, 2항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6장 후보자 등록

제16조(후보자 등록)

- ①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6>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서약서
 3. 후보자 추천서
 4.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광역 시·도당 발급)
 5. 사진 (이미지 파일, 해상도 150×150 픽셀이상, 10MB이내 권장)
 6.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서
- ③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해당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2항 3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는 당원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추천인의 경우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 외 당원게시판 댓글 등 온라인을 통한 추천도 인정한다.
- ⑤ 2항 2호의 후보자 서약서 중 성평등·장애인평등 교육서약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장애인평등 교육 이수증을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⑧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되, 제10조와 제11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등록무효)

-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19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의 사퇴는 투표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퇴로 간주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대표단회의의 의결로 사퇴가 승인된다. <신설 2020.5.16>

제20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제24조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으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22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의 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기간)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6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24조 (금지사항) 각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종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② 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⑤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제27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5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투표

제28조(투표의 종류 및 방법)

- ① 투표는 투표기간 동안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감자 등 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9조(투표기간)

- ① 투표기간은 5일로 한다.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될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 ②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30조(현장투표소)

-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 ②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 투표 개시 3일전까지 각 후보자에게 참관인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 ④ 현장투표소 투표시 관리자는 투표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 당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의 지참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 ⑤ 2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제3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음을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제32조(투표용지의 배부)

- ① 투표용지는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 ②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기표방법)

-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투표함 등의 봉인)

-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참관인 등의 입회하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35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36조(투표함 등의 이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33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함 등의 인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38조(개표장소)

-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0분의1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0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1.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 8. 제33조에 의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0. 제32조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42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0장 당선

제44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 입당일, 추천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5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6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17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47조(임기 개시)

-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8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 ② 임기 개시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49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현장투표소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현장투표소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현장투표소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현장투표소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제48조 제3항에 준한다.

제51조(보궐선거)

-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총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관련 당규에 따른다.

제52조(본 규정 외의 선거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8.1.14)

제1조(당직·공직선거 특례) 제6조(선거권) 제7조(피선거권)에도 불구하고, 당헌 부칙 제4조 ‘과도기 운영’ 기간에 실시하는 당직·공직후보자 선출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입당하고 6개월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

부칙 (2018.8.1.)

제1조(당직·공직선거특례) 제 11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첫 전국동시당직선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20.1.5.)

제1조(당직·공직선거 특례) 당규 제19호(선거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52조 ②항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당원 이외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당원 이외의 지지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중공천제>를 실시한다. <민중공천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첨한 <민중공천제 시행계획>에 따른다.

부칙(2020.1.5.)

제1조(피선거권 특례) 당규 제19호(선거관리 규정)제7조(피선거권)3항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 대표단회의에서 추천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20.1.5.)

제1조(21대 총선 특례) 당규 제19호 3조 2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후보가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20.5.16.)

제1조(당직선거특례) 제 11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할당의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